2023 소방승진 시험대비

찍기특강

박이준 소방공무원법

epass 소방사관

최단기 합격으로 가는 길

<1> 임용시기

원칙	①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됨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특례	① 순직자 특별승진임용 ·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퇴직일의 전날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직권면직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③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2> 인사위원회

설치장소	소방청, 시·도
구성	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② 위원장 : 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소방청차장,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소방본부장 ③ 위원 :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일반적 응시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註: 횡령·배임) 및 제356조(註: 업무상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응시연령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 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간부후보생	21세 이상 40세 이하	

※ 적용기준
·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위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다만,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 가능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註: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 등)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5> 자격조건 (운전면허)

1.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임용권자는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6> 신체조건 등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7>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

1.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재임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직권면직된 소방공무원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채용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항공 분야 조종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

※ 1. 의사: 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및 6급 항해사·기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 이하
4.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방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 이하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 소방령 이하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

4.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소방 분야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

	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5. 5급공채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 등 : 소방령 이하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 소방위 이하

7. 경찰공무원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

<8> 시험의 구분

1. 공개채용시험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3차시험	체력시험
제4차시험	신체검사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①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

☞ 제1차시험 성적이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함

②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함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1.퇴직공무원의 재임용,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등에 합격한 자
서류전형・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다만, 필요시 체력시험을 병행 가능
2.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에 상응한 근무실적이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자, 외국어능통자, 경찰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서류전형・체력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 가능

<9> 시험의 출제수준

소방위 이상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소방장 및 소방교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소방사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10> 합격자 결정

1.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

2.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

다음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협업 능력, 침착성 및 책임감

3. **동점자의 합격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4. **추가합격자 결정**

①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②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1> 채용후보자명부

1.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함

③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2.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② 유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함

<12>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임용순위, 임용유예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경징계(이하 "경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 임용순위의 예외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5.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 임용의 유예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시보임용

원칙	소방장 이하: 6개월간, 소방위 이상 : 1년간
기간 단축	시보임용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면제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간 불포함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처분, 감봉처분
금액 지급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면직	1.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14> 임용심사위원회

1. **설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

2. 기능

①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하여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②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③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3.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

③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회의 결과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하거나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함

<15> 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전보의 주기	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함(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②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횟수 제한	소속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아니 됨(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16> 필수보직기간

원칙	1년
예외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5.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6.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9.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10.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1.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2.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17> 전보의 제한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

· 퇴직소방공무원의 재임용 ·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또는 사법시험 합격자등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
·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임용 ·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임용 ·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5년 이내
·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

▪ 그 밖의 경우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	2년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	①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2년 ②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3년

<18> 인사교류

1. 시·도 상호 간 인사교류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음

1. 시·도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시·도 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도 간 교류하는 경우
3.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방청과 시·도 간 인사교류

소방청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인사교류의 절차와 기준

(1)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등

① 시·도 상호 간 인사교류의 인원(연고지배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소방청장은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소방청장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해당 시·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2)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함.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4. 인사교류의 제한 등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음

<19> 파견기간

파견사유	파견기간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년 이내 (특히 필요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1~3호 중 "직제상 파견"의 경우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음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특히 필요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4.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법 제20조 제3항(이 영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직제상 파견" :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0> 시간선택제근무

1.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지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 **2. 근무시간** 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함 ②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함 **3. 기타** ① 시간선택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 가능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휴직을 하는 경우 또는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가는 경우이거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21> 별도정원 범위 中 휴직, 휴가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2> 동점자 처리 비교

선발시험	모두 합격자(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채용후보자명부	취업보호대상자 ➡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 연령이 많은 사람
승진대상자명부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23> 인사기록 내용의 작성과 변경

인사기록 작성, 유지, 관리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
인사기록 보관	①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인 경우 : 시·도지사
열람 가능자	인사기록관리자, 인사기록관리담당자, 본인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교육훈련성적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

보고·통보	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
재작성 사유	① 분실한 때 ②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③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④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정 사유	①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②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변경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

<24> 징계처분 등의 기록 말소

▪ **징계처분 말소**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 강등 : 9년 · 정직 : 7년 · 감봉 : 5년 ·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 **직위해제처분의 기록 말소**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25> 승진임용의 구분

심사승진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함
심사와 시험의 병행 승진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1계급 또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음
근속승진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해당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음
순직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

승진후보자의 승진	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봄

<26> 승진임용 비율과 예정인원수의 책정

병행 승진시의 임용비율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	
특별승진임용 별도 책정	원칙	① 소방위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 : 15퍼센트 이내 ②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 : 20퍼센트 이내
	비적용 가능	①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27>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1.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소방정 : 4년	소방령 : 3년	소방경 : 3년	소방위 : 2년
소방장 : 2년	소방교 : 1년	소방사 : 1년	

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시험승진 : 제1차 시험일의 전일

② 심사승진 :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③ 특별승진 : 승진임용예정일

3. 특별승진시 적용배제

① 순직자 : 순직한 경우(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2계급 특별승진 대상자(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비적용

② 자진 퇴직자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특별승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단,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관리역량교육과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중에서 행함

③ 기타 특별승진자 :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 이상이 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함

4.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제외되는 기간

①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② 승진임용 제한기간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28> 승진임용 제한 사유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예외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 6개월 가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공금에 대한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 관리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소방위 ➜ 소방경 승진임용하는 경우는 2026. 1. 1. 이후부터 적용),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29> 근무성적평정

평정대상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평정시기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 기준
분포비율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
평정점	60점을 만점(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 각 30점) (수) 55점 이상~60점 (우) 45점 이상~55점 미만 (양) 33점 이상~45점 미만 (가) 33점 미만
평정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함
예외	①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하지 아니함. ②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평정으로 봄 ③ 6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 :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 ④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 :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⑤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 :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평정으로 함

<30> 경력평정

평정대상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
평정시기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 기준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
평정점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기간의 계산	① 승진임용제한기간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 ②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기본경력 초과경력	

	기본경력	초과경력
소방정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기본경력 전 3년간
소방령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기본경력 전 5년간
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기본경력 전 4년간
소방위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기본경력 전 4년간
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
소방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기본경력 전 1년간
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기본경력 전 6개월간

<31> 교육훈련성적평정

1. 평점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
소방령・소방경・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전문능력성적 3점

※ 소방위 계급의 경우는, 2026. 1. 1. 이후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방위는 현재 전문교육 3, 직장훈련 4. 체력검정 5, 전문능력 3

2. 평정시기

①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 기준

② 재평정 :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함

3.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

4. 평정제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아니함

5. 성적 의제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

6.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전문교육성적 : 총 3점 이하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과정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직장훈련성적 :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각 2점 만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의 성적 중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

③ 체력검정성적
소방청예규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 : 5점 이하

④ 전문능력성적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 : 3점 이하

<32> 가점평정

▪ 가점평정 사유와 가점

가점평정 사유	가점	합계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0.5점 이내	5점 이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5점 이내	
해당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2.0점 이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2.0점 이내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경우	3.0점 이내	

▪ 전산능력 가점평정

자격증 종류	평 정 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0.3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0.5	0.3

▪ 기타

· 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함

·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평정은 소방장 이하에 한함.

·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 다만,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함

· 임용권자는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음

<33>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제출

1. 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② 피평정자는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소방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함

2. 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4>평정점의 산정 방식

1. 근무성적평정점

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 이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소방령 및 소방경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 이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소방령 및 소방경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 이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5>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작성대상	승진요건을 갖춘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작성기준일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작성시기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함	
작성기준	소방정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
	소방령 이하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

<36>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등

▪ 조정사유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퇴직자가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5. 제8조 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7.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8.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9.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조정방법**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영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의 경우
   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나.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승진대상자명부에 추가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서 삭제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3.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비고란에 그 정정사유를 적는다.
4. 퇴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퇴직일과 그 사유를 적는다.
5.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날과 그 사유를 적는다.

※ 조정기준일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음

▪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발생**

1. 원칙 :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짐
2. 예외 :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짐

<37> 승진심사

1. 승진심사 시기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

2. 심사대상자의 수

승진대상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인 사람의 수
1 ~ 10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5배수
11명 이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50명

3.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1.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자
2.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註: 시험부정행위자)

<38>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제4호 및 제5호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
3. 시·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 대통령이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소방청장이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소방청장이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4.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5.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39> 승진심사의 실시

1. 승진심사의 기준

1. 근무성과 :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 :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2. 승진심사자료

· 승진심사계획서
· 승진심사대상자명부
· 승진심사 사전심의표
·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 개인별 인사기록
·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 역량평가·다면평가 결과(실시한 경우에 한정)
· 청렴도조사 결과
·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승진심사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승진심사위원(위원장을 포함)·간사 및 서기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4. 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①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서약서를 제출
②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됨
③ 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됨

5. 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객관평가와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함

객관평가	· 근무성과 :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 경험한 직책 :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위원평가	·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40> 승진시험 실시 개요

실시방법	계급별 실시 원칙
실시기관	① 소방청장이 실시(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② 시·도지사 :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고,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함)
응시자격	①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 4년(소방정), 3년(소방령, 소방경), 2년(소방위, 소방장), 1년(소방교, 소방사) ②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시행일	소방청장 또는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정하는 날
시행공고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

<41> 특별승진 대상자

1. 1계급 특별승진 대상자

(1)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 이상이 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닐 것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1.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사람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4. 기타 소방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사람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 이상이 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닐 것

(4)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일 것(단,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 관리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예외)

(5) 순직한 경우 :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 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승진임용의 제한을 비적용

2. 2계급 특별승진 대상자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 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승진임용의 제한을 비적용

<42> 특별승진의 계급범위와 공적 기준

▪ 계급범위

사유	승진범위
·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소방령 이하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방정감 이하

▪ 공적 인정범위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직 중

<43> 근속승진

요건	재직	· 소방사 ⇨ 소방교 : 4년 · 소방교 ⇨ 소방장 : 5년 · 소방장 ⇨ 소방위 : 6년 6개월 · 소방위 ⇨ 소방경 : 8년
	기타	①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②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를 초과할 수 없음
기간단축	1. 인사혁신처장이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실시한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 1년	
심사 시기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44> 대우공무원

의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 제한사유가 없는 우수공무원을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대우공무원수당(월 봉급액의 4.1%)을 지급하는 제도
근무기간 요건	· 소방정 및 소방령 : 7년 이상 ·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사 : 5년 이상
선발 절차와 시기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
감액지급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수당은 계속 지급(다만 감액 지급) · 정직기간, 강등(3개월) : 100% · 감봉기간 : 1/3
자격상실 등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됨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됨(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음)

<45> 복무규율

여행의 제한	①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 ② 비상근무 등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
비상소집 등	①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국외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2일 전까지 소방관서의 장은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 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집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응소 또는 지휘선상 근무를 하여야 함 ③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시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교대제 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음 1. 2조 교대제 :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 2조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번을 정하여 2월 3회(1회 1근무일을 원칙으로 함) 이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

<46> 공가로 승인해야 하는 사항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

건강진단
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 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47> 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음
1.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 3일 이상
2. 행정서비스 개선·대민업무 관련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2일 이상
3. 그 밖의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1일 이상

<48>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1. 제복의 착용 기간
① 여름철(하복)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철(동복)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음
②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음.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제복의 지급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②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음. 단,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을 변상하게 하여야 함
③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함

④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

<49>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1. 설치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심의 사항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1.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3. 중앙소방학교의 장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0>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대상</th><th>방법</th></tr>
<tr><td rowspan="3">기본 교육 훈련</td><td>신임교육</td><td>「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td><td>•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td><td rowspan="3">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td></tr>
<tr><td rowspan="2">관리역량 교육</td><td rowspan="2">승진후보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이 받</td><td>소방위 계급
(소방위 계급으로의 승진 후보자를 포함)</td></tr>
<tr><td>소방경 계급
(소방경 계급으로의 승진 후보자를 포함)</td></tr>
</table>

		는 교육훈련	소방령 계급 (소방령 계급으로의 승진 후보자를 포함)	
	소방정책 관리자교육		소방정 계급 (소방정 계급으로의 승진 후보자를 포함)	
전문교육훈련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소방령 이하	직장훈련으로 실시.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
기타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	모든 계급	직장훈련으로 실시
자기개발 학습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 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활동	모든 계급	

<51> 교육훈련계획

1.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2. 시・도지사는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
3.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제3항).

4.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제4항).

<5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구분		교육훈련 과정명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기간	교육훈련기관	
						중앙 소방학교	지방 소방 학교
기본교육		신임 교육	소방장 이하 공채·경채자 과정	소방장 이하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52주 이내	○	○
			소방위 이상 경채자 과정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12주 이상	○	
			소방간부 후보생과정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합격자	52주	○	
		관리 역량 교육	소방위과정	소방위 및 소방위 승진후보자	1주 이내	○	○
			소방경·소방령과정	소방경·소방령 및 소방경·소방령 승진후보자	2주 이상	○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소방정 및 소방정 승진후보자	24주 이내	○	
전문교육훈련	자격취득 관련 과정	현장 지휘관	초·중·고급지휘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름		○	○
			전략 지휘관			○	
		화재 대응능력	1급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2급				○
		인명 구조사	1급·2급	「인명구조사 교육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전문			○	
		응급 구조사	1급·2급	「응급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
		화재 조사관	-	「화재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2급				○
	그	특성화교육과정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훈	반일	○	○

	밖에 과정	심화과정	련기관별 교육훈련계획에 따름	(4시간) 이상	○	
		기초과정				○
민·관 교육훈련		(民)대형대상, (官)중앙부처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계획에 따름		○	
		(民)중·소형대상, (官)지자체소속				○

<53>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직장훈련계획의 내용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
2.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기술훈련
3.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4.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5.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서별·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5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퇴교사유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55>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1. 자격기준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담당할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결격사유

1.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6>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

구분	교육훈련시설
1. 옥내 훈련시설	가. 전문구급 훈련장 나. 수난구조 훈련장 다. 화재조사 훈련장 라. 소방시설 실습장 마. 가상현실 훈련장
2. 옥외 훈련시설	가. 소방종합 훈련탑 나. 산악구조 훈련장 다.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라. 실물화재 훈련장 마. 대응전술 훈련장
3. 교육지원시설	가. 업무시설 나. 강의시설 다. 관리시설라. 편의시설 마. 주거시설 바. 저장시설

<57> 위탁교육훈련

1.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포함 사항** (단,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 계획
6. 훈련비 명세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의무복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2.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훈련에 필요한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해야 함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거주지,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도, 훈련결과,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함

1.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

4. 복귀명령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1. 제40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8> 의무복무 등

▪ **의무복무**

신임교육과정	신임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
위탁교육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

▪ **소요경비 반납조치**

구분	산정기준
1.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	소요경비 × $\frac{1}{2}$
2.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경비 × $\frac{(\text{의무복무 개월수} - \text{근무 개월수})}{\text{의무복무 개월수}}$
3.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소요경비 전액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추가 반납액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 개월수} - \text{근무 개월수})}{\text{의무복무 개월수}}$$

<59> 징계의 종류

	신분상 불이익	재산상 불이익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 1/2 또는 1/4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해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 1/4 또는 1/8 감액. 퇴직수당 1/4 감액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정지. 18개월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제한.	보수 전액 감액
정직	공무원신분 보유하나 일정기간(1월~3월) 직무정지. 18개월 동안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	보수 전액 감액
감봉	공무원의 신분보유. 12개월 동안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1 감액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6개월간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	

<60> 징계시효 등

▪ 징계시효

10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년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각종 공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 사건

감사원에서 조사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징계시효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봄

▪ 징계의결 재요구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 ⇨ 징계시효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음

<61> 징계와 감사원의 조사 등과의 관계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④ 소방기관의 장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이 경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함

<62> 징계의 가중 의결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63> 징계위원회의 관할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2.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3.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 징계위원회**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
5.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
6. 관련 사건의 관할
① 임용권자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② 위에 따라 징계등 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

<64>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

※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1. 소방청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5> 소청심사

청구기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 가능)

<66>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67> 휴직

▪ 직권휴직

휴직사유	휴직기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3개월 이내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그 전임 기간

※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1>, <2>에 한정하여 적용

▪ 청원휴직

휴직사유	휴직기간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그 채용 기간.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

※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4>에 한정하여 적용

▪ 휴직의 효력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됨

<68>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 직위해제의 사유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등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

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직권면직의 사유**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69> 소방공무원의 정년

연령정년	60세 ※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	
계급정년	**원칙**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강등의 경우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함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
	연장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70>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 **중앙고충심사위**

-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	소방청,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공무원 위원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민간위원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위원장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
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함)

<71>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및 조사

신고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음
조사	1. 인사혁신처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임용권자등이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실시 및 그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조사 실시 요구를 했음에도 임용권자등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조사해야 함
피해자에 대한 조치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7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소방청장	①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시행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 ⑤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시·도지사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

<73> 보훈 보상금과 유족

▪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지급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의 처리**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나이가 많은 사람

▪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승계되는 경우**

1. 사망한 경우 2. 위 “1순위(배우자)~5순위(미성년 제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74> 특별위로금

의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
신청절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 1. 업무에 복귀한 날 2. 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인용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
지급범위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 ※ 미출근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frac{\text{계급별기준호봉}}{180\text{일}} \times 1.5 \times$ 미출근일수

<75> 소방공무원 기장령

구분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
대리 수령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령 가능	
수여권자	소방청장	
수여대상자 추천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음	
수여시기	소방지휘관장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
	소방기념장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
패용	①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보유 ②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끝 -